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8. 5. 28.(월) 조간	배포	

책임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기한(02-2100-2990)	담당자	김준 사무관 (02-2100-2994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진호(02-3145-8070)		이길성 상호금융총괄팀장 (02-3145-8072)

제 목 :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

-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(1. 25.) 및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(1. 19.)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탁법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 추진**
 -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 적용
 -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
 -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총당금 부담 합리화

I. 주요내용

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(1. 25.) 후속조치

- ① 비조합원 대출한도*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%로 가중 적용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(승§16조의2)

(현행)	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비조합원 신규대출}}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신규대출}}$	$\leq \frac{1}{3}$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

(개선)	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비조합원 신규대출}}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} \times 150\% + \text{기타 신규대출}}$	$\leq \frac{1}{3}$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

- ②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%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(規程§4조의6)

- ①사잇돌대출과 ②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% 이상, 가중평균금리 16.5% 이하, 최고금리 20%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

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(1. 19.) 후속 조치

①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(規程§4조의7)

-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(농·수·산림, 신협)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

②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(規程별표1-3)

-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 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* 적용

* 현행 제도는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

-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

<가계·기업대출 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>

구 분		정상	요주의	고정	회수의문	추정손실
가계대출						
기업대출	개인사업자	1%	10%	20%	55%	100%
	경기민감업종*(법인)					
	기타업종(법인)	0.85%	7%		50%	

*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,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업, 임대업

다 기타 사항

-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 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'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'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 (令§24조)

II.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(5. 28.~7. 8.) 등을 거쳐 10월 시행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